□ 각종 서식 내용

-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실무자들이 작성·관리하여야 하는 각종 서식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시 수행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하였다.

1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적용하는 서식

- 제1호 서식 ~ 제22호 서식

2. 자체안전점검 수행 내용

- 가설공사, 콘크리트공사, 강구조물공사, 굴착공사, 성토 및 절토공사, 교통안전관리, 공사현장 및 인접 구조물, 해체작업

3. 정기안전점검 수행 내용

- 가설공사, 콘크리트공사, 강구조물공사, 굴착공사, 성토 및 절토공사, 교통안전관리, 공사현장 및 인접 구조물

4. 아파트현장 정기안전점검비(예시)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					처리기간 일
신청인	명 칭 (상 호)		전 화 번 호		
	성 명 (현장대리인)		기 술 등 급		
	사무소 소재지				
공 사 명					
현 장 소 재 지					
공 사 기 간	실착공예정일		준공예정일		
공 사 금 액					
확 인 신 청 내 용	(안전관리계획,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)				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을

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000 공사감독작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귀하

※ 구비서류 :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2부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결과 통지서

신청인	명 칭 (상호)		전 화 번 호	
	성 명 (현장대리인)		기술등급	
	사무소 소재지			
공 사 명				
현 장 소 재 지				
공 사 기 간	실착공예정일		준공예정일	
공 사 금 액				
확 인 내 용	(안전관리계획,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)			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에 의거 귀하가 확인 신청한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결과 (적정, 조건부적정, 부적정)함을 통지(하니 동 붙임내용을 보완하여 재확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)합니다.

년 월 일

확 인 자: (인)

붙임 : 1.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(확인필) 1부.
2. 보완하여야 할 사항(보완사유포함) 1부.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

공 사 명				
공 사 기 간	착공일		준공예정일	
담 당 분 야				
선 임 기 간				
선 임 자 인 적 사 항				
성 명		기 타		
직 책				
자 격 종 목	등 급	등 록 번 호	등록 년 월 일	

위 사람을 상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(분야별 책임자, 담당자)로 선임합니다.

년 월 일

명 칭 (상호) :
성 명 (대표자) : (인)

【별지 제4호 서식】

공사 개요서				
공 사 명				
공사현장 주소			전 화 번 호	
공 사 기 간			공사금액(낙찰율)	( )
발주자	명 칭 (상호)		전 화 번 호	
	성명(대표자)		기 타	
	주 소			
설계자	명 칭 (상호)		전 화 번 호	
	성명(대표자)		기 타	
	주 소			
건설사업관리	명 칭 (상호)		전 화 번 호	
	성명(대표자)	대표자:	기 타	
		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	기 타	
	주 소			
시공자	명 칭 (상호)		전 화 번 호	
	성명(대표자)	대표자:	기 타	
		현장대리인:	기 타	
	주 소			

1. 현장 전체 공사개요

2. 안전관리대상물 공사개요

(각 대상물 별로 작성) *여백이 부족하면 뒷장에 첨부하여 작성

【별지 제5호 서식】

가설비계(타워크레인, 호이스트 등) 설치 개요서					
비계의 종류	단관비계, 강관틀비계, 달 비계, 이동식 비계, 기타 ( )				
규 모					
최대적재하중					
사용재료	명 칭	종류(재질)	규 격	수 량	비 고

분야별 책임자	성 명	소 속	교육이수현황

붙임 : 비계설치 개요도면 (평·단면도, 조립도 등)

【별지 제6호 서식】

가설도로 설치 개요서				
형식 및 종류	가설도로			
	가 교			
규 모	길 이	폭	높 이	구 배
시 공 공 법	가설도로			
	가 교			
사 용 재 료	명 칭	규 격	수 량	용 도
투 입 장 비	명 칭	규 격	수 량	용 도
분 야 별 책 임 자	성 명	소 속		교육이수현황

붙임 : 가설도로 설치 개요도면 (평·단면도, 조립도 등)

【별지 제7호 서식】

흙막이(터널 지보공) **개요서**

굴 착 토 량						
굴 착 심 도						
공 법 형 식						
공 사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
흙 막 이 벽		구분	띠 장		지 보 형 식	
흙막이벽의종류			설치깊이	제 원	설치깊이	제 원
길 이		1 단				
근 입 깊 이		2 단				
타 설 방 법		3 단				
항 타 방 법						

주요투입장비	장 비 명	규 격	수 량	용 도
주요자재	자 재 명	규 격	수 량	용 도

분야별 책임자	성 명	소 속	교육이수현황

붙임 : 흙막이 설치 개요도면 (평·단면도, 조립도 등)

【별지 제8호 서식】

굴착공사 개요서

적 용 공 법				
공 사 기 간				
규 모	굴착깊이	굴착폭	굴착길이	

주요투입장비	장 비 명	규 격	수 량	용 도
주요자재	자 재 명	규 격	수 량	용 도

분야별 책임자	성 명	소 속	교육이수현황

붙임 : 1. 흙막이 설치 개요도면 (평·단면도 등)
2. 굴착공사로 인한 영향권 설정도면

【별지 제9호 서식】

발파공사 개요서					
적 용 공 법					
발파작업량					
암 의 종 류					
주요재료 및 장비	종 류	명 칭	규 격	수 량	비 고
	화 약				
	뇌 관				
	천공기계				
	기 타				
분 야 별 책 임 자		성 명		소 속	교육이수현황

붙임 : 1. 발파공사 개요도면 및 서류 (발파설계 도면 등)
2. 발파공사로 인한 영향권 설정도면

【별지 제10호 서식】

콘크리트공사 개요서						
콘 크 리 트	물 량		공 기			특 기 사 항
	주요 투입 장비	장 비 명				
거 푸 집 거푸집지보공	수 량		공 기	설치		
				해체		
	재 질					
	거푸집		지 주			
	장 선		수 평 연결재			
	띠 장		사 재			
철 근	수 량		공 기			
	가 공 방 법					
공 종	별 첨 도 면		시 공 안 전 계 획			
거 푸 집 거푸집지보공						
철 근						
콘 크 리 트						
분 야 별 책 임 자	성 명		소 속		교육이수현황	

【별지 제11호 서식】

강구조물공사 개요서

	강재의 종류	규 격	수 량	용 도
강재				

	조립기계의 종류	규 격	수 량	조립방법
조립기계				

가설설비의 종류	1. 안전대 부착설비 2. 작업통로 3. 보호울 4. 재료적치장 5. 기타 ( )
안전설비의 종류	1. 수평보호 철망 2. 수직보호 철망 3. 승강설비 4. 기타 ( )

분야별 책임자	성 명	소 속	교육이수 현황

붙임 : 강구조물공사 개요도면 및 서류 (평·단면도 및 조립상세도 등)

【별지 제12호 서식】

성토 및 절토공사 개요서

토공량	흙깍기		흙쌓기	

규모	길 이	폭	높 이	구 배

배수처리				
	배수층 설치 구역			
	배수처리 공법			

비탈면보호				
	보호공법			
	사용재료	명 칭	규 격	수 량

주요투입장비	장비명	규 격	수 량	용 도

분야별 책임자	성 명	소 속	교육이수현황

붙임 : 개요도면 (토량배분, 배수처리, 비탈면 시공 및 보호공 등 관련도면 및 서류 등)

【별지 제13호 서식】

해체공사 개요서					
해 체 대 상	구 조 명 칭				
	구 조 종 류				
	규 모				
	해 체 기 간	착 수		완 료	
해 체 기 계	기 계 의 종 류				
	능 력, 대 수				
	보조기계의 유무				
	종 류, 대 수				
해 체 공 법	적 용 공 법				
	주 요 내 용				
안 전 시 설 (해당항목에 "○" 표)	1. 외부비계 ( )				
	2. 방음차단벽 ( )	7. 환기설비 ( )			
	3. 방음시트 ( )	8. 소화기 ( )			
	4. 보호시트 ( )	9. 가스용단설비 ( )			
	5. 소음대책 ( )	10. 양중설비 ( )			
	6. 살수설비 ( )	11. 기 타 ( )			
분 야 별 책 임 자	성 명	소 속	교육이수현황		

붙임 : 1. 해체공사 개요도면 및 서류 (해체 순서도, 해체공법 도면, 자료 등)
2. 영향권 설정도면

【별지 제14호 서식】

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				
1. 개요				
명 칭 (상 호)		금 액 내 역	(1) 재 료 비	
대 표 자				
공 사 명			(2) 관급자재비	
현 장 명				
발 주 자			(3) 노 무 비	
공 사 기 간			(4) 부대시설비	
공사의 종류	1. 1종시설물 2. 2종시설물 3. 10m 이상 굴착공사 4.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. 기타 건설공사		계	
			안 전 관 리 비	

2. 항목별 실행계획	
항 목	금 액
1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	
2.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	
3.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(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)	
4.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(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)	
5.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	
총 계	

3. 세부사용계획 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)

(1)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

항 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산출근거 및 사용시기
계					
안전관리 계획서 작성					
공정표, 상세도면, 안전성 계산서 작성					
안전관리 계획서 검토					

(2)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

항 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산출근거 및 사용시기
계					
정기 및 초기점검 비용					
진동·소음·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					
기계·기구의 완성검사 비용					
기계·기구의 정기검사 비용					
기 타					

(3) 발차.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

항 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산출근거 및 사용시기
계					
지하매설물 보호					
발파.진동.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					
지하수 차단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비용					
기 타					

(4)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·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

항 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산출근거 및 사용시기
계					
공사시행 중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위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					
상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					
기 타					

(5)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

항 목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	산출근거 및 사용시기
계					
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용					
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					
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					
기 타					

【별지 제15호 서식】

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			
건 설 업 체 명		공 사 명	
현 장 명		대 표 자	
공 사 금 액	원	공 사 기 간	
발 주 자		누 계 공 정 율	%
계상된 안전관리비	원	공사진척도에 따른 기준금액	원 (안전관리비×공정율)

사 용 금 액	
항 목	금 액
계	
1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	
2.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	
3.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(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)	
4.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(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)	
5.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	

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출자 직책 성명 (인)

【별지 제16호 서식】

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			
항 목	사용일자	사용내역	금 액
1.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 비용			
2.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용			
3.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(발파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)			
4.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(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)			
5.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등			

(주)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

【별지 제17호 서식】

( )분기 안전관리비 사용현황

현장명 : _____ 작성자 : _____ 현장대리인 : _____

공사금액	계상안전관리비	이전까지 사용비	금회분기 사용비	남은 비용

구분	계획서 작성비 등	안전점검비 등	주변 건축물 피해방지대책 비용	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	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
월투자계획					
도급자 사용내역	안전관리계획서 작성	공사현장의 안전점검	지하매설물 보호	안전시설 설치비용(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위한)	계측장비 설치 운영 비용
	공정표 등	환경측정비용(진동,소음,분진)	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비용(발파진동소음)		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비용
	검토비용	기계기구 완성 및 정기검사	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비용(지하수 차단 등)	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	가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
계					
하도급자 사용내역	안전관리계획서 작성	공사현장의 안전점검	지하매설물 보호	안전시설 설치비용(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위한)	계측장비 설치 운영 비용
	공정표 등	환경측정비용(진동,소음,분진)	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비용(발파진동소음)		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비용
	검토비용	기계기구 완성 및 정기검사	주변지역 피해방지대책 비용(지하수 차단 등)	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	가구조물 안전성 확인 비용
계					
소계					

【별지 제18호 서식】

자체안전점검 일지(대상시설물별 작성)

실시일자 : 2017. . . ~ 2017. . .	분야별 책임자 : _____ (서 명)

일자	공 종	점검 항목	지 적 사 항	조 치 사 항	점검자
'17. 11.20	ex)콘크리트공사	ex)거푸집			
		ex)철근공			

※ 조치사항은 사진을 첨부할 것

【별지 제19호 서식】

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	
공 사 명	
현 장 소 재 지	
점 검 일 시	
점검기관(책임자)	
대 상 공 종	
점 검 항 목	
지 적 사 항	
조 치 일 시	
조 치 사 항	

(주) 1. 점검항목별로 별도 작성할 것
2.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진을 뒷면에 첨부할 것

【별지 제20호 서식】

안전교육 일지				
교 육 일 시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교 육 구 분	1. 일상 안전교육 2. 정기 안전교육 3. 협력업체 안전관리 교육 4. 기타 ( )			
교 육 인 원				
실 시 내 역	교육담당자	교육시간	교육장소	교육방법

교 육 내 용	교 육 과 목	교 육 내 용

※ 교육광경 사진은 상기 공란 또는 뒷면에 첨부

【별지 제21호 서식】

안전교육 이수자 명단

교육구분							
교육일시				참가 인원	총 명		
교육장소				교육담당자			
소 속	직 종	성 명	서 명	소 속	직 종	성 명	서 명

【별지 제22호 서식】

가설공사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 _____

NO.1 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 가설비계	(1) 강관비계	◦강관 및 부속철물은 KS규격에 합당한 것인가		
		◦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, 뒤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은 없는가		
		◦각부에는 깔판, 깔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하였는가		
		◦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 1.5~1.8m, 간사이 방향 1.5m이하로 하였는가		
		◦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는가		
		◦띠장 및 장선은 1.5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		
		◦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이하로 하였는가		
		◦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웠는가		
		◦구조체와 수직·수평으로 5m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		
		◦기둥간격 10m 마다 45° 각도의 처마방향 가새를 설치하였으며, 가새에 접속되지 않은 기둥은 없는가		
		◦지주, 띠장, 수평재, 가새 등의 접합은 전용철물(꺽쇠, 보울트 등)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지주나 띠장의 이음은 동일 직선 상에 오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.0m 이내로 하였는가		
		◦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로 하였는가		
		◦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-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돌출된 곳은 없는가 - 지주, 수평재, 띠장의 긴결상태가 이완된 곳은 없는가 -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어진 곳은 없는가 - 지주가 침하하였거나,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		

NO. 2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 가설비계	(2) 틀비계	◦부재에 외력에 의한 변형 또는 불량품은 없는가		
		◦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할 때는 주틀의 높이를 2m 이내로 하고, 주틀간의 간격은 1.8m 이하로 하였는가		
		◦주틀간의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, 최상층과 5층이내 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		
		◦구조체와 수직 6m, 수평 8m 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		
		◦밑받침을 설치하고,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받침을 설치 수평·수직을 유지시켰는가		
		◦각 부재, 프레트 등의 연결핀, 접합철물 또는 고정핀은 완전히 조였는가		
		◦벽이음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m 이내로 하였는가		
		◦띠장 방향으로 길이가 4m이하이고, 높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10m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하였는가		
		◦다음 사항은 수시로 점검하는가 - 지주의 지지물이나 각 부재의 이음 부분이 풀려있지 않은가 - 지주와 수평강관 그리고 가새의 이음 부분에 변형은 없는가 - 벽이음이나 연결대가 풀린곳은 없는가 - 지주가 침하하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		
	(3) 달비계	◦결속선은 #8 또는 #10 철선으로서 새것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지 않는가 - 한 가닥에서 소선(필러선은 제외한다)의 수가 10% 이상 절단된 것 -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%를 넘는 것 - 현저한 변형이나 부식된 것		
		◦다음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가 - 길이가 제조 당시 보다 5%이상 늘어난 것 - 고리의 단면 직경이 10%이상 감소된 것		
		◦달기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율은 10이상, 달기 체인 및 달기 후크의 안전율은 5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		
		◦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였는가		
		◦와이어로우프 일단은 콘크리트 구조물, 앵커 또는 권상기에 2개소 이상 묶어 결속하였는가		

NO. 3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 가설비계	(4) 이동식 비계	◦비계에 사용된 강관은 KS규격에 합당하고, 부식, 균열, 변형 등이 없는 것으로 하였는가		
		◦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설치하였는가		
		◦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, 전도 등을 방지하였는가		
		◦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 책임자를 명시하였는가		
		◦부재의 접속부, 교차부는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		
		◦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였는가		
2. 가설통로	(1) 가설 경사로	◦비탈면의 경사각은 30° 이내로 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		
		◦목재는 미송·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과, 철재는 6mm이상의 철판을 바닥판으로 사용하였는가		
		◦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였는가		
		◦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하고 높이 7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		
	(2) 가설계단	◦가설계단은 1단의 높이가 22cm, 너비 25~30cm를 표준으로 설치하였는가		
		◦계단의 폭을 옥내에서 75cm 이상, 옥외에서는 60cm 이상으로 하였는가		
		◦지주 및 난간기둥 간격은 120~150cm로 적당하며 적절한 조명설비를 갖추었는가		
		◦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였는가		
		◦계단 및 계단참은 500kg/m^2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였는가		
	(3) 작업발판	◦발판 1개는 폭 40cm 이상, 두께 3.5cm 이상, 길이 3.6m 이하의 것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최대적재하중(400kg 이하), 위험경고 및 지지판을 부착하였는가		
		◦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, 간격 3cm 이하로 발판 1개당 2개소 이상 지지하였는가		
		◦이음부는 발판간에 20cm이상 겹치고 중앙부는 장선 위에 고정하였는가		
		◦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.6m 이내인가		

NO. 4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3. 낙하물 방지	(1) 방호철망	◦철망호칭 #13 내지 #16의 것, 또는 아연 도금한 철선 0.9㎜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15cm 이상 겹쳐 대고 60cm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(2) 방호시트	◦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kg·㎜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방호시트 둘레 및 모서리를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하였는가		
		◦단열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		
		◦구조체와 45cm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하였는가		
	(3) 방호선반	◦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		
		◦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 내밀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° 내지 30° 정도로 하였는가		
		◦선반 널은 두께 1.5cm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		

가설공사 정기 안전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가 설 계 획	◦가설공사 계획의 적정성		
	◦가설물의 형식과 배치계획의 작성 여부		
2.비계 및 발판	◦비계용 자재의 규격과 상태		
	◦외부비계의 설치 상태 (지주·띠장간격)		
	◦외부비계와 구조물과의 연결 상태		
	◦발판의 설치 상태 (재질,틈,고정)		
	◦비계용 브라켓을 사용할 때 브라켓의 고정상태 및 강도		
	◦틀비계의 전도 방지 시설		
3.낙하물 방지	◦낙하물 방지시설 재료의 규격과 상태		
	◦낙하물 방지망의 돌출길이 및 설치 각도		
	◦벽면과 비계사이에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상태		

콘크리트공사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

NO.1 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 거푸집	(1) 일반사항	◦여러번 사용으로 인하여 흠집이 많거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가		
		◦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금이 나있는 것은 없는가		
		◦거푸집에 못이 돌출되어 있거나 날카로운 것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가		
		◦강재 거푸집은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려 있는 것을 교정한 후 사용하는가		
		◦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나 있는 것은 쇠솔(Wire Brush) 또는 사포 등으로 닦아 내고 박리제(Form oil)를 엷게 칠해 두었는가		
		◦강재 거푸집에 붙은 콘크리트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제를 칠해 두었는가		
		◦강판, 목재, 합판 거푸집은 창고에 보관하여 두거나 야적시에는 천막 등으로 덮어두고 녹 또는 부식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		
		◦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		
		◦거푸집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조립하고 있는가 기초→기둥→벽체→보→바닥		
		◦흔들림 막이 턴버클, 가새 등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		
	(2) 기초 거푸집	◦거푸집 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여유있게 되어 있는가		
		◦거푸집선 및 조립 상태가 정확한가		
		◦관통구멍, 앵커보울트, 차출근의 위치, 수량, 지름 등은 정확한가		
		◦독립기초의 경우 거푸집이 콘크리트 타설시에 떠오르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가		
		◦밑창 콘크리트면의 기초 먹줄의 치수와 위치는 정확하며 도면과 일치하는가		

NO. 2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 거푸집	(3) 기둥, 벽의 거푸집	◦거푸집 하부의 위치는 정확한가		
		◦기둥 및 벽거푸집은 추를 내렸을 때 수직인가		
		◦건물의 요철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가		
		◦하부에는 청소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, 콘크리트 타설시는 완전히 닫도록 조치되어 있는가		
		◦개구부의 위치와 치수 및 상자 넣기(나무토막) 등의 설치 위치는 정확한가		
	(4) 보, 슬래브의 거푸집	◦거푸집의 치수는 정확한가		
		◦모서리는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가		
		◦슬래브의 중앙부는 처짐에 대한 약간 솟음을 두었는가		
		◦기계설비 및 천정설치용 고정 장치는 설치되어 있는가		
2. 철근공	(1) 가공	◦철근은 철근구조도에 의하여 절단, 구부리기 등의 가공을 하였는가		
		◦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철근과 다른 강도의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		
		◦구부림은 냉간가공으로 하였는가(부득이 가열가공을 실시할 경우 현장책임자의 승인을 받았는가)		
		◦유해한 흠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는가		
		◦코일 모양의 철근은 직선기를 사용하는가		
		◦철근 구조도에 제시된 가공형상, 치수로 가공하되 바깥쪽 치수를 따라서 가공하였는가		
		◦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구부릴 경우 용접부위에서 철근 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렸는가		
		◦한번 가공한 철근을 재 가공하여 사용하지 않았는가		
	(2) 조립	◦들뜬 녹 등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였는가		
		◦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했는가		
		◦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했는가		
		◦철근의 교점을 지름 9㎜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(Clip)으로 긴결하는가		

NO. 3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2. 철근공	(2) 조립	◦벽이나 슬래브의 개구부에는 보강철근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간격재(Spacer)를 적절히 배치하였는가		
		◦철근의 조립 후 다음 사항을 규정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였는가 - 철근의 개수와 직경 - 이음의 위치 - 철근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-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 상태		
		◦철근을 조립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였는가		
	(3) 정착이음	◦인장 철근의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특히 보의 중앙부근 이음을 피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이음 및 정착길이는 큰 인장력을 받은 것은 철근 지름의 40배, 압축 또는 적은 인장력을 받은 것은 지름의 25배로 하며, 이음철근의 지름이 다를 경우는 그 평균 지름으로 하였는가		
		◦철근의 이음 위치는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하여 엇갈려 잇도록 하였는가		
		◦철근의 정착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였는가 - 기둥의 주근은 기초 - 보의 주근은 기둥 -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 - 직교하는 끝부분의 보 밑에 기둥이 없을 경우는 보 상호간 - 지중보의 주근은 기초 또는 기둥 - 벽 철근은 기둥, 보, 기초 또는 바닥판 - 바닥판의 철근은 보 또는 벽체		
3. 콘크리트	(1) 타설	◦작업 당일 작업 전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·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는 보수하였는가		
		◦작업중에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·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였는가		
		◦타설 중 배근이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타설 속도는 표준시방서에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가		
		◦콘크리트 타설 한계 위치는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가		
		◦거푸집 동바리에 측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설순서 및 일일 타설 높이를 정하였는가		

NO. 4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3. 콘크리트	(2) 이어치기	◦보, 슬래브의 이어치기는 스팬(Span)의 중앙부에서 수직으로 하였는가		
		◦캔틸레버보나 슬래브는 절대로 이어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보의 어어치기는 수평으로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슬래브의 중앙부에 작은보가 있을 때에는 작은보 나비의 2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어치기 하였는가		
		◦벽은 개구부 등의 끊기 좋고, 이음자리 막기와 떼어내기가 편리한 곳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음 하였는가		
		◦아치(Arch)의 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으로 하였는가		
		◦수평으로 이어치기를 할 때 레이턴스를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의 물을 제거하였는가		
		◦이어치기 할 곳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 면을 거칠게 하였는가		
		◦이어치게 되는 면을 깨끗이 하고 물로 적셔 두었는가		
	(3) 다짐	◦진동기를 가지고 거푸집 속의 콘크리트를 옆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진동기를 밑의 층 속에 약 10cm 정도 삽입하였는가		
		◦막대형 진동기는 수직 방향으로 넣고, 넣는 간격은 약 60cm 이하로 하였는가		
		◦막대형 진동기(꽂이 진동기) 및 표면 진동기 등은 각기 특성에 맞는 곳에 사용하는가		
		◦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뽑을 때에는 천천히 뽑아 내어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(4) 양생	◦타설후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최소 5일간은 수분을 보존(조강일 경우 3일)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양생기간 온도는 항상 5℃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콘크리트 타설후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등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강우, 폭설 등의 기상 변화에 대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을 보호하였는가		
		◦일광의 직사,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대책을강구 하였는가		

NO. 5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4. 거푸집지보공	(1) 일반사항	◦지보공의 위치와 간격, 부재를 제대로 설치하고 견고히 연결하였는가		
		◦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밑둥잡이 또는 깔목을 설치하여 부동침하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경사진 바닥면에 세울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		
		◦횡목의 중앙에 설치하는 등 편심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높이 조절용 받침목, 철판 등은 이탈되지 않았는가		
		◦이동용 틀비계를 지보공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활차가 고정되어 있는가		
		◦지보공 및 보를 지지하는 주요 부분은 각각 규격품 또는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현저한 손상,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존치 기간은 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는가		
	(2) 강관지주	◦단관 및 잭 베이스(Jack Base)의 변형, 파손 등은 없는가		
		◦각부의 베이스 플레이트(Base Plate)는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켰는가		
		◦강관 지주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이음을 2방향으로 설치하고 견고한 것에 고정하였는가		
		◦수평연결, 기초지주의 부재는 단관을 이용하여 지주에 클램프(Clamp)로 확실하게 연결하였는가		
		◦두부의 잭 베이스는 멍에에 확실히 고정하였는가		
		◦3개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강관지주를 사용할 때 접속부의 나사는 마모되어 있지 않는가		
	(3) 파이프 지주	◦파이프 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높이 2m이내 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		
		◦파이프 받침의 두부 및 각부는 견고하게 고정하였는가		

NO. 6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4. 거푸집지보공	(3) 파이프 지주	◦파이프 받침은 조립전에 상태의 결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였는가		
		◦파이프 받침의 꽂기핀은 전용의 철물을 사용하였는가		
		◦조립시 수평 연결의 설치를 고려하였는가		
		◦스팬이 긴 건물의 경우는 스팬의 양단부 및 중앙부의 지주를 먼저 세워 높이를 정하도록 하였는가		
	(4) 강관틀 지주	◦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하였는가		
		◦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지주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켰는가		
	(5) 목재	◦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키도록 하였는가		

콘크리트공사 정기 안전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거푸집 공사	◦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 여부		
	◦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		
	◦부위별 거푸집 사용 횟수의 적정성		
	◦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		
	◦박리제 도포 상태		
	◦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		
	◦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 방지 조치		
	◦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		
	◦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		
2.철근 공사	◦가공제작 도면의 작성 여부		
	◦철근 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		
	◦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		
	◦철근의 배근간격		
	◦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		
	◦간격재(Spacer)의 재질과 설치간격		
	◦신축이음 부위, 지하층의 배근 방법 및 상태		
3.콘크리트 공사	◦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		
	◦Slump Test의 유무		
	◦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		
	◦콘크리트 다짐 상태		
	◦콘크리트 타설전 청소 상태		
	◦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		
	◦콘크리트 양생시 보호조치		
	◦구조물에 매설되는 배관의 위치 및 피복두께		
4.거푸집 지보공	◦콘크리트의 강도조사		
	◦지보공의 재질 및 상태		
	◦지보공의 이음부, 접속부, 교차부 연결 및 고정상태		
	◦지보공 설치 간격의 적정성		
	◦경사면에서의 지보공 수직도와 Base Plate 정착상태		
	◦지보공의 침하방지 조치		
	◦파이프 지보공 연결시 전용철물 사용 여부		

강구조물공사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

NO.1 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 건립 작업	(1) 일반사항	◦현장건립 순서와 공장제작 순서는 일치하는가		
		◦2층 이상을 한 번에 세우고자 할 경우는 1개폭이상 조립이 되도록 계획하여 도괴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가		
		◦건립 기계의 작업 반경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먼저 세운 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		
		◦기둥을 2본 이상 세울 때는 기둥을 세울 때마다 보를 설치하고 안정성을 검토하면서 건립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였는가		
		◦건립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보울트 체결을 가능한 단축하도록 후속공사를 계획하였는가		
		◦기둥의 기둥밑판(Base Plate)은 중심선 및 높이를 정확히 설치하고 앵커보울트로 완전히 조이도록 하였는가		
		◦조립한 부재에 달아 올리는 부재가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가		
		◦데릭을 설치하는 철골부분은 리벳조임을 하거나 보울트조임을 완전히 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지붕 트러스등 구성재를 달아 올릴 때는 반대하중으로 변형되기 쉬운 것을 보강하거나, 지주를 세워 대고 조립하는가		
		◦앵커보울트는 전체를 평균하게 조이도록 하였는가		
		◦기둥 밑판은 모르타르 채움공법을 사용할 때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 진동,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기둥 건립시 가조립 보울트가 종료될 때까지는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늦추지 않도록 하는가		
		◦보의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버팀줄 또는 버팀대로 보호하였는가		
		◦기둥밑둥 부분이 핀일 때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인장 와이어로우프를 철거하는가		
		◦분할핀은 사전에 철골에 연결하였는가		
		◦브래킷(Bracket), 커버플레이트(Cover Plate) 등은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부착하였는가		

NO. 2

구 분	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 건립작업	(2) 인양작업		◦인양부재의 중량, 중심을 확인하고 달아 올리는가		
			◦기둥 인양시는 기둥의 꼭대기 보울트 구멍을 이용해 인양용 작은 평철판을 덧대어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였는가		
			◦매어 달 철판에 와이어로우프를 설치할 때는 새클을 사용하도록 하였는가		
			◦브래킷(Bracket) 아래 부분에 와이어로우프를 걸 경우에는 보호용 굄재를 넣어 인양하도록 하였는가		
			◦기둥은 일으켜 세울 때는 밑부분이 미끄러지지 않게 서서히 들어올리도록 하였는가		
			◦기둥 밑부분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	◦인양 와이어로우프를 제거 할 때는 새클핀이나 로우프가 손상되지 않았나를 확인하였는가		
			◦클램프는 수평으로 체결하고 2군데 이상 설치하였는가		
			◦클램프는 정격용량 이상 인양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	◦사용전 반드시 클램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정상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하였는가		
2. 접합	(1) 용접	① 전기용접	◦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		
			◦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		
			◦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		
			◦절연 호울더(Holder)를 사용하는가		
			◦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		
			◦작업중단시 스위치는 껐는가		
			◦우천,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		
			◦용접 작업장 부근에 가연물이나 인화물은 없는가		
			◦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		
			◦교류아크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 장치를 사용하였는가		
			◦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		
			◦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		

NO. 3

구 분	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2. 접합	(1) 용접	② 아세틸렌용접	◦작업장 가까이는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를 준비하여 놓았는가		
			◦인화물을 제거한 뒤 작업을 하는가		
			◦가스용기 취급은 조심해서 하며, 팽개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	◦압력계, 꼭지쇠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		
			◦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나서 작업하는가		
			◦작업전에 취관, 호스,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		
			◦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		
			◦환기상태가 나쁜 좁은 실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가스 누출에 주의하도록 하는가		
			◦용기 온도는 40℃이하로 유지하는가		
			◦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		
			◦용기는 빈용기와 충만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		
			◦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(2) 보울트		◦진동,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	◦처마 높이가 9m를 초과하고 스팬이 13m를 초과하는 강구조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는 보울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	◦보울트 구멍 지름은 보울트의 공칭축 지름에 0.5㎜ 더한 것 이하로 하였는가		
			◦보울트로 체결하는 판의 총두께는 지름의 5배이하로 하였는가		
			◦보울트와 너트는 진동 등에 의하여 풀리는 일을 막기 위하여 2중 너트, 스링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가		
3.도장작업			◦현장도장전에 공장도장을 한 강재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였는가		
			◦칠 작업전 바탕 만들기 상태는 양호한가		
			◦칠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에 칠을 하지는 않았는가		
			◦작업중 손상된 도막에 대한 보수상태는 양호한가		

NO. 4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3.도장작업	◦바탕 만들기가 완료된 후 신속히 칠 작업이 실시되는가		
	◦먼저 부재의 운반, 조립중에 공장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같은 도료로 도장을 하는가		
	◦전체적으로 균일한 도막칠이 이루어졌는가		
	◦5℃이하, 상대습도 80%이상일 때 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◦칠 작업시 또는 도막이 마르기 전에 수분이나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
강구조물공사 정기 안전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건립작업	◦공사계획의 적합성 여부 - 부재의 형상 - 철골의 자립 안정도 - 보울트 구멍, 이음부, 접합방법 - 가설부재 및 부품 - 건립용 장비 및 건립작업성 - 건립순서 및 현장 접합의 시기		
	◦조립 순서도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		
	◦양중 계획의 적정성		
	◦부재의 수직 수평도		
	◦부재의 야적방법		
	◦PC공사의 코킹재질 및 시공상태		
	◦고정철물 부식의 방지조치		
	◦철골 공사의 용접 및 볼트 체결 상태		
	◦가조립 상태의 방치 여부		
	◦크레인의 와이어로우프 상태		
2.접합 및 도장작업	◦용접기 및 가스용기의 보관 상태		
	◦도장작업의 적정성		
	◦손상된 도막의 보수 상태		

굴착공사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

NO.1 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일반사항		◦굴착면 및 굴착심도 기준을 준수하는가		
		◦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에 비닐이나 가마니를 덮는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였는가		
2. 굴착공사	(1) 인력굴착	◦굴착면의 구배는 토질의 굴착높이에 따른 안전구배 기준 이하로 하였는가		
		◦파낸 토사 등을 굴착부의 상부 또는 경사면 상부 부근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였는가(적치할 경우에는 굴착면의 붕락이나 토사 등의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는가)		
	(2) 기계굴착	◦공사의 규모, 주변환경, 토질, 공기 등의 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였는가		
		◦작업전에 기계를 점검하였는가		
		◦기계가 운반될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의 상태를 점검하였는가		
		◦사면이나 무너지기 쉬운 지반에 장비를 세워두지 않았는가		
		◦굴착장비등은 안전능력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외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기존의 설치된 구조물 주변을 굴착하는 경우 전도 및 붕괴를 고려하였는가		
		◦작업구역을 로프울타리, 붉은 깃발 등으로 표시하였는가		
		◦야간작업을 할 때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작업시야를 확보하였는가		
		◦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각종 표식, 방호대, 야간조명 등을 충분히 설치하였는가		
		◦기계의 무리한 사용을 금지하고 노면의 끝단이 연약지반일 경우는 유도자를 배치시켰는가		
		◦흙막이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는 동바리 부재의 설치 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는가		
		◦전선이나 구조물 등에 인접하여 붐을 선회해야 될 작업에는 사전에 방호조치를 강구하였는가		

NO. 2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2. 굴착공사	(3) 발파굴착	◦인가를 받은 안전한 장소에 화약을 저장하였는가		
		◦1일 화약류 소비량이 규정 이상인 경우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준비를 위한 화약류 취급소를 마련하였는가		
		◦화약 관계자 외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로서 햇빛의 직사를 받지 않는 곳에 두었는가		
		◦화기 또는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않았는가		
		◦화약, 폭약과 뇌관을 동일한 상자, 자루 등에 집어넣지 않았는가		
		◦모선은 절단, 결선빠짐, 결선틀림 등이 없도록 각선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였는가		
		◦모선결선 후 안전한 개소에서 도통시험을 하였는가		
		◦모선을 지상의 레일, 파이프 또는 기타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개소에 접속시키지 않았는가		
		◦발파작업을 하기 전에 발파개소 상부의 표토는 제거하였는가		
		◦전기발파를 할 때는 미변전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가		
		◦낙뢰 위험이 있을 시는 발파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부근의 지형, 건물, 교통로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 우회로, 대피장소, 피난 구역을 계획하였는가		
		◦전회 발파의 불발 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천공하는가		
		◦발파 후 막장을 점검하여 불발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하였는가		
		◦전회 발파한 구멍을 이용하여 천공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전기뇌관을 운반할 때는 각선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누전우려가 있는 것에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장전작업에 대해서는 발파구멍이나 암반상황을 검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장전하였는가		
		◦발파 장소에 전기 누전 여부를 점검하였는가		
		◦장전중 부근에서 천공이나 기타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	◦장약시에는 구멍을 잘 청소해서 자갈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였는가		

NO. 3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2. 굴착공사	(3) 발파굴착	◦점화위치는 폭파의 정도에 따라 격리된 안전한 장소로 하였는가		
		◦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할 때 외는 자물쇠는 채우거나 떼어 놓도록 하였는가		
		◦발파기와 모선과의 연결은 점화직전에 하도록 하는가		
		◦전기발파에서 발파모선을 발파기로부터 떼어 내고 재점화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5분이상 경과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		
		◦터널 내에서는 잔류 가스 및 지반의 붕괴 위험이 없어진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고 있는가		
		◦불발공에 대한 점검 및 처리 규정은 설정되어 있는가		
		◦불발공 폭파를 위한 천공은 평행으로 천공하고 그 간격은 기계굴착시 60㎝ 이상, 인력 굴착시 30㎝ 이상인가		
4.흙막이		◦공사현장 및 주변 지역으로부터 침투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차단 상태는 적절한가		
		◦인접 구조물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		
		◦현장 내외의 집수통 설치, 배수도량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는가		
		◦조립도에 따라 조립되고 위험한 곳은 없는가		
		◦버팀목 및 띠장은 보울트, 쐐기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		
		◦버팀목 및 흙막이판들의 사이에 틈은 없는가		
		◦부재의 연결부분은 확실하게 이음이 되어 있는가		
		◦중간지주가 있을 때 이것이 띠장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가		
		◦흙막이재가 심하게 갈라지거나 부식된 것은 없는가		
		◦흙막이판 뒷면에 틈이 없고 누수나 토사의 유출이 없도록 하였는가		
		◦부재설치가 지연되거나 동바리에 근접한 상단에 재료를 쌓아두지 않았는가		

굴착공사 정기 안전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 결과	조치 사항
1.굴착공사	◦굴착예정지의 실지조사 여부 - 지형, 지질, 지하수위, 암거, 지하매설물의 상태 - 주변시설물, 전주, 가공선의 상태 - 유동성 물질의 상태		
	◦다음에 대한 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-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인접시설물 보호 - 굴착순서, 굴착면의 경사 및 높이 - 건설기계의 종류 및 점검·정비 - 흙막이 공사		
	◦지반의 종류에 따른 굴착높이 및 구배의 준수여부		
	◦발파굴착시 화약의 보관 상태		
	◦발파후 처리 상태		
	◦전기발파시 누전여부의 확인		
2.흙막이공사	◦조립상세도의 적정성 여부		
	◦시공시 부재의 품질, 토질 및 수압 등의 고려 여부		
	◦보일링 또는 히이빙의 발생 또는 위험 여부		
	◦부재연결 부분의 상태		
	◦누수 및 토사의 유출여부		
	◦버팀목 및 흙막이판의 조립상태		
	◦지보공 주변 지반면의 균열 상태		

성토 및 절토공사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

NO.1 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흙쌓기공사	◦사전에 나무뿌리 등의 유해한 잡물을 제거하였는가		
	◦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방지를 위하여 바닥면에 지하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		
	◦성토중에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는 각 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였는가		
	◦변상상태 등의 관찰(함몰, 균열등)을 수시로 하는가		
	◦비탈면의 하부 및 상부, 작은 단부 등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		
	◦비탈면 상부에 물의 침투 방지조치(시트 등의 활용, 가설배수로 설치, 조기식재 등)를 하였는가		
	◦비탈면 상부에 중량물을 두지 않으며, 또한 중장비의 주행을 삼가하도록 하였는가		
2.흙깍기공사	◦상부 비탈면에 내리는 우수나 용수가 비탈면을 흐르지 않도록 비탈면 상단부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		
	◦비탈면이 높은 경우 보통 5~10m높이마다 소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수의 유도를 하도록 하였는가		
	◦소단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탈면 하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였는가		
	◦하향 배수의 유도를 위하여 비탈면을 따라 종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가		
	◦우수후에는 토사붕괴의 예방을 위해 균열 등 비탈면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는가		

성토 및 절토공사 정기 안전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흙쌓기 공사	◦원지반의 유해물 제거여부		
	◦흙쌓기 부위의 다짐상태		
	◦배수시설 설치상태		
	◦흙쌓기면의 함수비		
	◦흙쌓기 재료의 적정성		
2.흙깍기 공사	◦시공전·후 현장상태의 기록 보관유무		
	◦지질조사 및 지하 매설물의 검토 확인여부		
	◦지하 매설물의 보호대책 수립여부		
	◦비탈면 배수시설의 적정성		
	◦비탈면 구배의 안전성		

교통안전관리 자체 안전점검표

NO.1

점검대상 :

점검일자 :

결재				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도로의관리	◦도로를 점유·사용하는 경우 출입방지시설을 포함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도록 하였는가		
	◦차선의 차단,우회 등의 통해경로의 변경시 임시 노면표시를 하였는가		
	◦간판, 표식 등은 소정의 장소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, 항상 정비ㆍ점검을 하는가		
	◦야간조명, 보안등, 유도등 등은 전구가 끊어졌는가를 점검하여 항상 보수관리를 하는가		
2.간판,표식의 정비	◦공사간판, 우회로 안내판, 등 각종 표지등은 진동이나 바람 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조치를 하였는가		
	◦안내표식, 협력요청 간판 등은 조종자 및 보행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였는가		
	◦표시판, 표식등 간판류는 표시내용이 야간에도 명확이 보이도록 조치를 하였는가		
3.공사현장의 출입구	◦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면한 보도를 낮추거나 높여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단차, 빈틈, 미끄러짐 등이 없는 구조로 하였는가		
	◦출입구에는 필요에 따라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였는가		
4.기타	◦공사장소 주변에 학교등이 있는 경우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공사 차량의 통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켰는가		
	◦공사착수전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개요를 알리고 협력요청을 하였는가		
	◦공사현장밖이라도 작업원이 운전하는 차량 등의 교통안전에 대해 주의시켰는가		

교통안전관리 정기 안전점검표

NO. 1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교통안전	◦교통관리 계획서의 작성여부 및 적정성		
	◦교통통제 시설의 설치상태		
	◦도로의 점유 및 사용상태		
	◦교통관리 구간의 점검상태		

공사현장 및 인접구조물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

NO.1 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 공사현장	(1) 작업환경	◦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환기조치를 하였는가		
		◦분진·비산의 방지 조치를 하였는가		
		◦토석, 암석 등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갱내, 옥내의 작업장 등에서 분진측정을 하였는가		
		◦통풍설비가 설치되는 갱내 작업장에서의 통풍량, 기온, 탄산가스 등의 측정을 하였는가		
		◦산소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산소, 황화수소 등의 농도측정을 하였는가		
	(2) 좁은 공간의 작업	◦작업공간이 좁은 곳에서 기계와 인력의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작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웠는가		
		◦시공장소나 공간크기에 따른 동작범위·능력을갖는 기계 등을 선정하였는가		
		◦기계의 주행로,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		
		◦될 수 있는 한 기계와 사람의 동시작업을 피하도록 하였는가		
		◦작업방법 및 신호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가		
	(3) 출입방지시설	◦공사현장의 주위는 강판, 시트, 또는 가아드펜스 등의 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구역을 명확히 하였는가		
		◦출입방지시설은 관계자외 쉽게 들어올 수 없는구조로 하였는가		
		◦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는가		
		◦도로에 근접하여 굴착등 땅을 파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덮개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빠지지 않도록 하였는가		

NO.2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2.인접구조물	◦기초 상태와 지질조건 및 구조형태를 점검하였는가		
	◦작업방식, 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		
	◦구조물 하부 및 인접 굴착시 크기, 높이, 하중 및 외력(진동,침하,전도등)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		
	◦기존 구조물의 침하방지 조치를 하였는가		
	◦웰포인트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라우팅, 화학적 고결방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는가		
	◦비상투입용 보강재를 준비하였는가		
	◦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		

공사현장 및 인접구조물 정기 안전점검표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1.공사현장	◦현장 주변의 정리·정돈상태		
	◦현장 출입방지 시설의 상태		
	◦현장주변의 계시물 상태		
2.인접 구조물	◦인접구조물 현황의 파악 상태		
	◦피해발생시의 대책		
	◦작업방식,공법에 따른 안전대책의 수립여부와 적정성		
	◦인접구조물의 피해발생여부		

해체작업시 자체 안전점검표

점검대상 :

점검일자 : _____

결재				

구 분	점 검 사 항	점검결과	조치사항
(1) 가설 공사	◦해체시 부딪칠 수 있는 가설전기선에 대해서 절연 방호장치를 확인하였는 가		
	◦자재의 낙하·비산방지 조치를 하였는가		
	◦해체는 조립의 역순으로 하는가		
(2)흙막이 공사	◦인접 시설물에 근접해서 타설한 강널말뚝이나 H형강 말뚝을 인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고려하였는 가		
	◦흙막이 해체작업전 변위상태를 확인하였는가		
	◦인발장비의 주행로, 또는 설치장소의 지반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		
	◦장비작업과 인력작업을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는가		
(3)콘크리트 공사	◦거푸집해체시 표준시방서의 규정대로 존치기간을 확보하였는가		
	◦지주의 바꾸어대기를 시행하고 있는가		
	◦해체작업시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는가		
	◦상・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상호간에 연락체계를 갖추었는가		

아파트 5개동 1차 정기안전점검비 산출

한 현장에 5개동(10층 이상)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의 아파트 1차(5개동 동시 점검) 정기안전검 비용을 산출한다

ㅇ 정기안전점검대상 각 동별 연면적 현황

구 분	연면적(㎡)	구 분	연면적(㎡)
101동	15,000	104동	13,000
102동	13,000	105동	12,000
103동	14,000		
연면적 계	67,000		

ㅇ 기본 인원수

구 분	외 업		내 업	
	각동별 기준 인원수	5개동 기준 인원수	각동별 기준 인원수	5개동 기준 인원수
101동	4+(5/20)×3=4.75	4.75	2+(5/20)=2.25	2.25
102동	4+(3/20)×3=4.45	4.45×0.7=3.115	2+(3/20)=2.15	2.15×0.7=1.505
103동	4+(4/20)×3=4.60	4.60×0.7=3.22	2+(4/20)=2.20	2.20×0.7=1.540
104동	4+(3/20)×3=4.45	4.45×0.7=3.115	2+(3/20)=2.15	2.15×0.7=1.505
105동	4+(2/20)×3=4.30	4.30×0.7=3.01	2+(2/20)=2.10	2.10×0.7=1.470
계		**17.21**		**6.02**

ㅇ 조정 인·일수 : 18.94+6.61 = 25.55

· 외업 : 17.21(기준 인원수)×1.1 = 18.94

· 내업 : 6.02(기준 인원수)×1.1 = 6.61

ㅇ **보고서인쇄비**(5부, 1부 200매, CD포함)

ㅇ 설 계 원 가 계 산 서

구 분	단위	수량	단가	금 액	비 고
도 급 예 정 액				17,217,267	
I. 공 급 가 액				15,652,061	
1.기 본 대 가				15,652,061	
가. 직접인건비				5,607,432	
(가) 외 업	인·일	18.9	219,469	4,156,742	
(나) 내 업	인·일	6.6	219,469	1,450,690	
나. 제 경 비	식	1		6,168,175	직접인건비의 110%
다. 기 술 료	식	1		2,355,121	(가+나)의 20%
라. 직 접 경 비				3,876,454	
(1) 여비 등				336,000	
일 비	인·일	18.9	20,000	378,000	공무원여비규정
여 비	인·일	18.9	20,000	378,000	공무원여비규정
(2) 차량 운행비	일	4.7	40,266	189,250	
(3) 위험수당	식	1		415,674	외업인건비 10%
(4) 기구, 기계 손료	식	1		560,743	직접인건비 10%
(5) 보고서인쇄비	식	1	1,612,625	1,612,625	일위대가
Ⅱ. 부가가치세	%	10		1,565,206	